

의안번호	제 576 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0년 11월 11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76
----------	-----

제출연월일 : 2020. 11.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재산의 취득

(단위: m²,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구분	수량	추정금액
충청북도교육청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건물	3,147.49	9,150,458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건물	2,527.75	7,845,629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798.00	2,413,857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토지	922.00	260,004
		건물	415.00	3,104,804
합 계		5건	7,810.24	22,774,752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4. 관계법령: 별첨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소재지	구분	수량					
가칭)충북 체육중학교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	건물	3,147.49	9,150,458	2024. 상반기	가칭)충북체육중 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교육감	도면1
옥 산 중 학 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77-3	건물	2,527.75	7,845,629	2022. 하반기	학구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2
충 주 중 앙 초 등 학 교	충주시 연수동 1003	건물	798.00	2,413,857	2022. 상반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목적 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3
보 은 교 육 지 원 청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6-3	토지	922.00	260,004	2021. 상반기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매입 및 신축	교육감	도면4
		건물	415.00	3,104,804	2022. 하반기			
합 계			7,810.24	22,774,752				

①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① 사업위치: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내)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으로 충북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체육 인재 육성
- 사업용도: 충북도내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배정
- 사업기간: 2021. 1. ~ 2024. 2.
- 소요예산(총사업비): 9,150,458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예산액	514,108	3,996,925	4,639,425	9,150,458

※ 교구 및 비품구입비 600,000천원은 미포함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교부금	도청	자체	소계	
건물	9,150,458	0	0	0	9,150,458	9,150,458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사비	교과교실	과학실	실	1.0	86,064	86,064
		과학준비실	실	1.0	21,516	21,516
		기술·가정실	실	1.0	86,064	86,064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술·가정준비	실	1.0	21,516	21,516
		음악실	실	1.0	86,064	86,064
		음악준비실	실	1.0	21,516	21,516
		미술실	실	1.0	86,064	86,064
		미술준비실	실	1.0	21,516	21,516
		일반교실	실	3.0	86,064	258,192
	학습지원 영역	컴퓨터실	실	1.0	86,064	86,064
		도서실	실	1.0	98,946	98,946
	교원 지원실	교무센터(교사실)	실	1.0	86,064	86,064
		문서고(학사)	실	1.0	43,032	43,032
		전산실(성적처리실)	실	1.0	43,032	43,032
		교사휴게실	실	1.0	43,032	43,032
	학생 지원실	학생자치실	실	4.0	43,032	172,128
		침실	실	17.0	82,642	1,404,914
		사감실	실	2.0	57,390	114,780
		화장실및샤워장	실	2.0	57,390	114,780
		세탁실	실	2.0	57,390	114,780
		다용도실	실	2.0	38,260	76,520
		건조실	실	2.0	86,085	172,170
		공용공간	m ²	1.0	998,586	998,586
	관리영역	연결복도	m ²	1.0	42,935	42,935
	생활영역	학생화장실(남,여)	실	2.0	126,990	253,980
		장애인화장실	실	2.0	22,393	44,786
		교직원화장실(남,여)	실	1.0	115,444	115,444
		세면실	실	1.0	61,464	61,464
	공용부분	고등학교(순면적의 50%)	식	1.0	1,423	749,964
	기타시설	물가인상분	식	1.0	164,394	164,394
		지하수	식	1.0	48,095	48,095
		승강기 기계장치(교사)	식	1.0	156,111	156,111
승강기 기계장치(기숙사)		식	1.0	156,111	156,11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kw	79.0	4,477	353,683	
신재생에너지(지열)		kw	54.0	1,325	71,550	
태양광발전 상계 거래		식	1.0	117,880	117,880	
철관 및 계시관		조	9.0	357	3,213	
교실냉,난방(EHP)		실	14.5	7,607	110,302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환기시설	실	14.5	5,086	73,747
		수변전설비	식	1.0	127,776	127,776
		영상장비 및 네트워크장비	식	1.0	100,000	100,000
		전기인입비	식	1.0	70,000	70,000
		LPG저장탱크설치	식	1.0	20,000	20,000
		상수도인입	식	1.0	15,000	15,000
		오수처리시설(분담금)		50.0	3,992	199,600
	토목	우수,오수,상수	m	300.0	325	97,500
		포장	m ²	2,600.0	105	273,000
		포장(철거)및이설	m ²	300.0	200	60,000
		포장철거 및 재설치	m ²	1,600.0	186	297,600
		조경	식	1.0	125,000	125,000
		기초보강(파일)	본	315.0	691	217,665
	소 계					8,384,140
	용역비 등	기본설계비	식	1.0	185,600	185,600
		실시설계비	식	1.0	209,264	209,264
		설계공모제작보상비	식	1.0	19,744	19,744
건축감리비		식	1.0	160,310	160,310	
소방,통신감리비		식	1.0	30,000	30,000	
V.E용역비		식	1.0	40,000	40,000	
에너지등급수수료		식	1.0	15,000	15,000	
녹색건축인증용역비		식	1.0	30,000	30,000	
시설부대비		식	1.0	22,400	22,400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식	1.0	54,000	54,000	
소 계					766,318	
합 계					9,150,458	

◦ 사업규모

- 건물 3,147.49m²

- 주요(부대)시설: 일반(교과)교실 11실, 지원영역 38실, 관리영역 1실, 생활영역 6실 등

◦ 기준가격: 9,150,458천원

- 건물 9,150,458천원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②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① 사업위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77-3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 사업용도: 보통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을 통한 학생 수용
- 사업기간: 2021. 1. ~ 2022. 12.
- 소요예산(총사업비): 7,845,629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계
예산액	387,058	7,458,571	7,845,629

※비품구입비 73,136천원은 미포함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 시행자	지방비				비고
			교부금	일반회계	자체	소계	
건물	7,845,629	2,300,000	0	0	5,545,629	5,545,629	

※주택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증축비용 23억원 사업시행자 부담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사비	교실	실	7.0	100,440	703,080
	컴퓨터실	실	2.0	100,440	200,880
	위클래스	실	1.0	100,440	100,440
	학생자치회실	실	1.0	100,440	100,440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방송실	실	0.5	100,440	50,220
원격수업촬영실	실	0.5	100,440	50,220
창고	실	1.0	100,440	100,440
화장실	실	2.0	147,250	294,500
교직원화장실	실	2.0	120,498	240,996
승강기시설	식	1.0	173,400	173,400
연결복도	m ²	170.0	2,158	366,860
필로티	m ²	759.0	863	655,017
공용면적	m ²	612.0	1,488	910,656
자유학기제교실	실	3.0	100,440	301,320
음악실	실	1.5	100,440	150,660
연구실	실	0.5	100,440	50,220
홈베이스	실	0.5	100,440	50,220
화장실	실	1.0	132,533	132,533
계단실	실	0.5	128,315	64,157
공용면적	m ²	231.0	1,488	343,728
구조보강	m ²	3,061.0	87	266,307
기존구조물철거	식	1.0	25,000	25,000
1층횡증축(기초)	실	9.0	18,121	163,089
기초타설비	6실당	2.0	14,985	29,970
기초보강비(파일)	본	184.0	833	153,272
칠판, 게시판	실	12.0	3,890	46,680
가설웬스	m	150.0	54	8,100
포장(점토바닥벽돌)	m ²	1,500.0	105	157,500
배수로	m	280.0	339	94,920
담장	m	120.0	501	60,120
비구방지망	m	90.0	300	27,000
조경	식	1.0	50,000	50,000
마사토운동장	m ²	2,000.0	32	64,000
급수인입(PE관)	m	180.0	203	36,540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우오수관연결	m	180.0	203	36,540
	전기간선	m	350.0	200	70,000
	통신간선	m	150.0	100	15,000
	소방간선	m	150.0	100	15,000
	태양광발전설비	kW	95.0	4,477	425,315
	냉난방(GHP)	실	17.0	11,168	189,856
	가스장비(5t이하)설치	식	1.0	35,000	35,000
	가스배관공사	식	1.0	30,000	30,000
	부스타펌프설치	식	1.0	20,000	20,000
	물탱크(10t)	식	1.0	13,294	13,294
	환기시설(바닥형)	실	17.0	5,086	86,462
	제로에너지 관련 시스템구축비용	식	1.0	100,000	100,000
	특별교실철거	실	2.5	12,634	31,585
	석면천장철거	실	1.6	5,009	8,014
	소 계				
용역비 등	설계비	식	1.0	307,191	307,191
	설계공모제 작보상비	식	1.0	30,720	30,720
	내진성능평가용역비	식	1.0	23,700	23,700
	건축감리비	식	1.0	145,000	145,000
	소방감리비	식	1.0	30,000	30,000
	시설부대비	식	1.0	10,467	10,467
	소 계				
합 계					7,845,629

◦ 사업규모

- 교실 7실 및 부대시설 등 2,527.75m²

- 주요(부대)시설: 보통교실 7실, 특별교실 및 교사연구실 10실, 화장실 및 공용면적 등

◦ 기준가격: 7,845,629천원

- 건물 7,845,629천원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3 총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① 사업위치: 충주시 연수동 1003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 사업용도: 다목적교실
- 사업기간: 2020. 12. ~ 2022. 5.
- 소요예산(총사업비): 2,413,857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예산액	5,000	653,116	1,755,741	2,413,857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특별교부금	일반회계(시청)	자체	소계	
건물	2,413,857	0	1,400,000	241,386	772,471	2,413,857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공사비	시설비	m ²	798.0	1,950	1,556,100
	무대장치, 커튼	식	1.0	63,295	63,295
	방송설비	식	1.0	50,030	50,030
	냉난방	식	1.0	66,316	66,316
	공기순환기	식	1.0	20,000	20,000
	기초파일	개소	80.0	691	55,280
	급수관 인입	m	100.0	281	28,100
	오수관 인입	m	100.0	281	28,100
	포 장	m ²	500.0	105	52,500

구분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운동장보수	m ²	200.0	20	4,000
	배수로	m	150.0	325	48,750
	전기 간선인입	m	200.0	200	40,000
	전기 용량증설 (500kw)	식	1.0	127,726	127,726
	담장설치	m	150.0	480	72,000
	놀이기구이설	식	1.0	10,000	10,000
	가설 웬스	m	120.0	49	5,880
	비막이통로	m	30.0	936	28,080
	소 계				2,256,157
용역비 등	설계비(실시)	식	1.0	101,600	101,600
	건축감리비	식	1.0	25,000	25,000
	전기감리비	식	1.0	13,000	13,000
	소방감리비	식	1.0	10,000	10,000
	시설부대비	식	1.0	8,100	8,100
	소 계				157,700
합 계					2,413,857

- 사업규모
 - 건물 798m²
 - 주요(부대)시설: 다목적교실 798m² 등
- 기준가격: 2,413,857천원
 - 건물 2,413,857천원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4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① 사업위치: 보은읍 장신리 67-1(기존 부지, 1,215㎡)

보은읍 장신리 66-3, 66-5, 66-6, 66-8(매입 부지, 총 922㎡)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 사업용도: 교직원 주거용
- 사업기간: 2021. 1. ~ 2022. 12.
- 소요예산(총사업비): 3,364,808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계
예산액	408,142	2,956,666	3,364,808

※비품구입비 57,000천원은 미포함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교부금	일반회계(도청)	자체	소계	
토지	260,004	0	0	0	260,004	260,004	
건물	3,104,804	0	0	0	3,104,804	3,104,804	
계	3,364,808	0	0	0	3,364,808	3,364,808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토지매입비		㎡	922.0	282,000	260,004
공사비	공동관사	㎡	684.0	2,257	1,543,788
	현관 및 계단실	㎡	399.0	1,426	568,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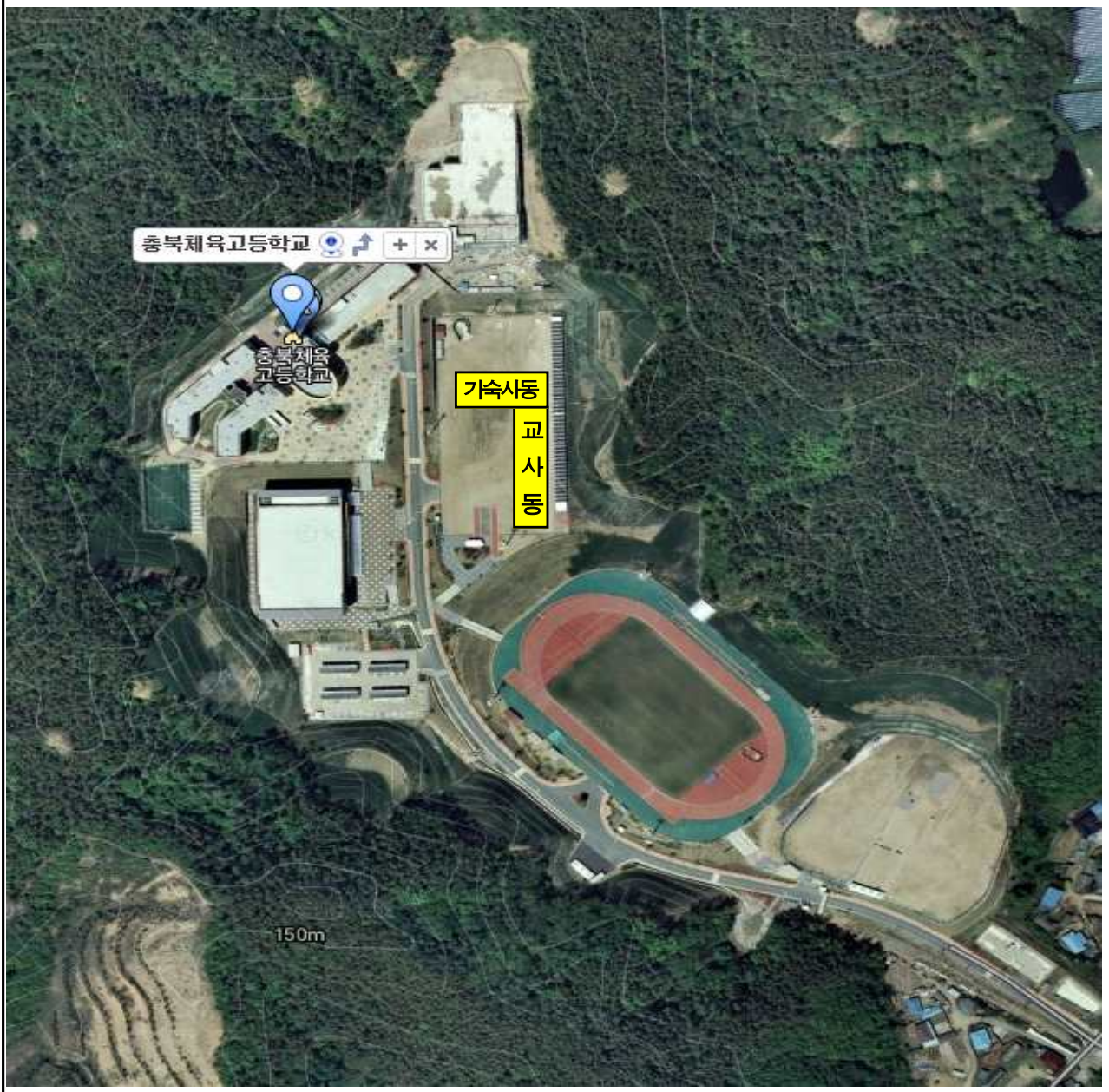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창고	m ²	36.0	1,426	51,336	
	기계실	m ²	64.0	1,426	91,264	
	승강기	개소	1.0	173,400	173,400	
	1층 횡증축(기초)	m ²	405.0	202	81,810	
	1층 횡증축(기초타설비)	식	1.0	14,985	14,985	
	기초보강비(파일)	본	27.0	833	22,491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m ²	190.0	141	26,790	
	담장철거 및 폐기물처리	m	150.0	62	9,300	
	CCTV	식	1.0	30,000	30,000	
	전기간선인입	m	100.0	250	25,000	
	표준시설부담금	식	1.0	10,000	10,000	
	포장(점토벽돌)	m ²	300.0	105	31,500	
	포장(아스콘)	m ²	300.0	78	23,400	
	배수로(콘크리트)	m ²	200.0	339	67,800	
	가스저장시설 및 배관	식	1.0	50,000	50,000	
	상수도인입	m ²	100.0	203	20,300	
	오수관연결	m ²	100.0	203	20,300	
	조경	식	1.0	30,000	30,000	
	소 계					2,892,438
	용역비 등	시설부대비	식	1.0	8,328	8,328
설계비(기본+실시)		식	1.0	133,035	133,035	
설계공모비용보상		식	1.0	13,303	13,303	
설계공모심사위원수당		명	9.0	200	1,800	
건축감리비		식	1.0	31,900	31,900	
전기감리비		식	1.0	12,000	12,000	
소방감리비		식	1.0	12,000	12,000	
소 계					212,366	
합 계					3,364,808	

- 사업규모
 - 토지 5필지 2,137m², 건물 415m²
 - 주요(부대)시설: 원룸형 관사 19세대(4층)
- 기준가격: 3,723,324천원
 - 토지(공시지가) 358,516천원, 건물 3,364,808천원
- 계약방법: 토지 - 수의계약, 건물 - 일반경쟁입찰

도면 1.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위치도

(단위: m²,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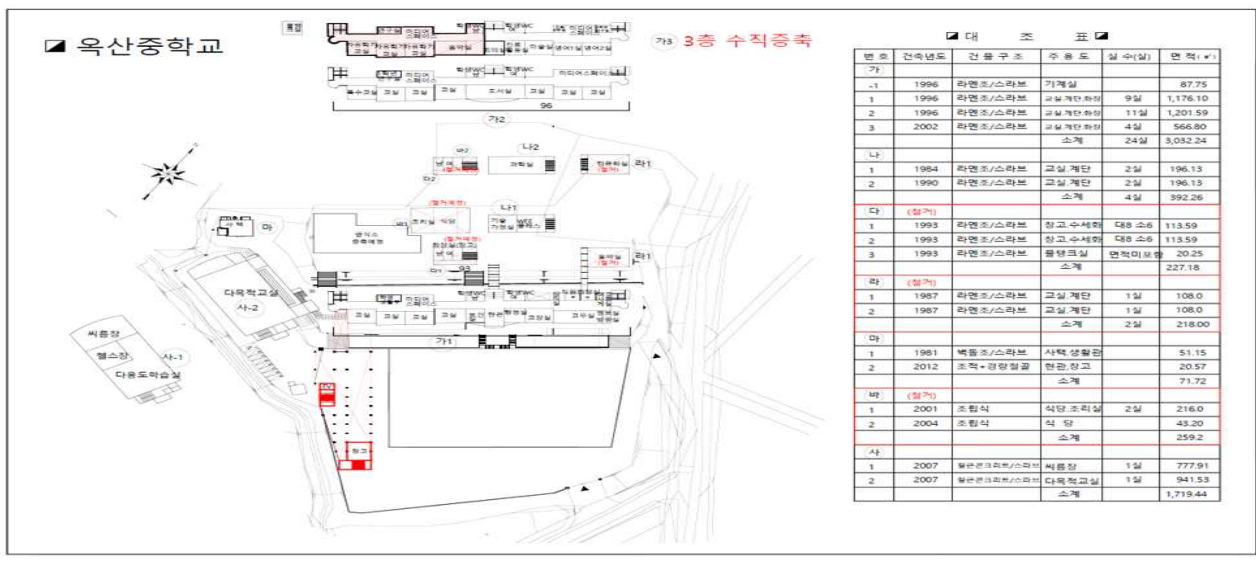
건 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 유
가칭) 충북체육 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	건물	철·콘조	3,147.49	9,150,458	충북도내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배치
계					3,147.49	9,150,458	



도면 2.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위치도

(단위: m², 천원)

건 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 유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77-3	건물	철·콘조	2,527.75	7,845,629	학구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계					2,527.75	7,845,629	



도면3.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 위치도

(단위: m², 천원)

건 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 유
충주중앙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주시 연수동	1003	건물	철콘조	798	2,413,857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					798	2,413,857	



도면 4. 보은교육지원청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위치도

(단위: m², 천원)

건 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 유
보은교육 지 원 청 공동관사 부지매입 및 신축	보은읍 장신리	66-3 외 3필지	토지	대지, 전	922	260,004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 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건물	철·콘조	415	3,104,804	
계					1,337	3,364,808	



관계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